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121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78238호로 마친
D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2.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9. 2. 27.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금원을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월 1,2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아버지 D은 2014.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9. 10.경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와 자녀 E, F, C이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법정상속분은 피고 3/9, E, F, C 각 2/9).

라. 피고와 E, F, C은 2020.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D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G,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2)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8 지분(=망인의 지분 1/2 × C 법정상속분 2/9)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C의 모친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일부 돈을 차용하여 피고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으로 망인에게 거 1/2 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고,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과 자녀를 성심껏 돌보아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한 일환으로 망인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를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피고는 위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4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8 지분(=망인의 지분 $1/2 \times C$ 법정상속분 2/9)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부 동 산 목 록

1동의건물의표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 건물의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47.14㎡

대지권의표시 : 경기도 용인시 대 1411㎡

대지권의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 소유권대지권 1411분의 46.6365

1) 2021.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 후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택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20. 4. 2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를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진 2020. 4. 22.을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으로 보기로 한다.